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4.12.29 조례 제 638호

(일부개정) 2005.07.01 조례 제 665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09.09 조례 제 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9.15 조례 제 88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09.17 조례 제933호

(전문개정) 2012.09.17 조례 제9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표부서”란 해당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보존기간·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구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7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 구성 및 관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의 운영)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